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81
------	------

제출일자 : 2023. 9. 5.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첨부
- 2) 입법예고(2023. 7. 27. ~ 2023. 8. 16.): 별도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평가: 의견반영(가족정책과)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농업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여 위원회 운영
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 나. 상설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농업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안 제5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제1항,
제7조제4항, 부칙<제14298호, 2016.12.2.> 제2조
 -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포함하여”를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위원회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 -----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
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발생 비용이 없으므로 비용 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공원녹지과 최성문
연 락 처	2627-1886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 1.]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996호, 2018. 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이란 도시에 있는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각종 여가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을 말한다.
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5.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6. "도시텃밭 운영자"란 도시농업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금천구의회 의원
2. 금천구 소속 4급 공무원
3.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농업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도시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관 계 법 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50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농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7조(도시농업협의회) 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도시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3. 제12조에 따른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4. 제20조에 따른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도시농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도시농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산립청 소속의 공무원 각 1명
-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법률 제14298호, 2016. 12. 2.>

제2조(도시농업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농업협의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6조(도시농업협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제6조제3항제5호와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위원회 경비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도시텃밭 등 지정)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3조(도시농업의 교육)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우선구매) 구청장은 도시농업으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환경 친화적 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전파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단체·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2.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3.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그 밖의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